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1
------------	------

발의연월일 : 2016. 9. 21.

발의자 : 주승용 · 황주홍 · 장정숙  
노웅래 · 김한정 · 윤영일  
최도자 · 강창일 · 정동영  
이춘석 · 이용호 · 김관영  
변재일 · 이개호 · 민홍철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성교육의 평가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을 정도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개별 학교 또는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인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현행법 제16조제2항에서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가 아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목 및 제2항).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평가 등”을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로 한다.

### 부 칙

i)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① (생 략)</p> <p>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제16조(인성교육의 <u>추진성과</u> 및 <u>활동 평가</u>)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 1항에 따른 평가 결과----- ----- -----.</p> <p>③ (현행과 같음)</p>